

테라스99 동탄 오피스텔 분양광고



- 한국부동산원 청약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은 2026.04.03. 시행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오니, 본 분양광고를 숙지한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내용 미숙지로 인한 착오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오피스텔 분양광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내용 미숙지로 인한 착오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오피스텔의 경우 청약자 '만 나이' 요건 기준일은 분양광고일(2026.09.09.) 기준입니다.
- 인터넷 청약접수 및 전산추첨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청약접수 및 분양받을 자의 선정에 관한 업무를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여 전산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본 오피스텔의 건설지역인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전매제한 : 본 오피스텔은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이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에 해당하지 않아, 분양권 전매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단,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2명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6조의4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동법 제10조 제2항 5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청약자격 : 본 오피스텔은 거주지역 및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청약 신청 가능하며 당첨되더라도 당첨자 관리 및 재당첨 제한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중복청약 유의사항 : 1인당 1실(건) 청약 가능하며, 동일인이 2실(건) 이상 중복신청 하는 경우 청약신청 전부가 무효처리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접수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반행위 관련 계약취소 및 벌칙사항 :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을 받거나 전매제한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라도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특히 전매제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예비당첨자 선정 : 본 오피스텔은 군별 900% 예비당첨자를 선정하며 예비당첨자 현황은 사업주체 홈페이지(<https://terrace99.co.kr>)를 통해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잔여호실 분양 : 예비당첨자 소진 이후 미계약 물량 발생 시에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체에서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예정입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한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일정 및 장소

구 분	청약접수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
일 시	2026.09.14.(월), 2026.09.15.(화) (09:00 ~ 17:30)	2026.09.18.(금) 16:00 이후	2026.09.21.(월)~2026.09.22.(화) (10:00 ~17:00)
방 법	인터넷청약 (은행창구 청약 시 은행영업시간까지)	청약Home 개별조회 (www.applyhome.co.kr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계약서류 지참하여 견본주택 방문
장 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테라스99 동탄 견본주택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 537, 라스플로레스 B동 1층 1027호~1028호) ☎ 1599-9903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국민 인증서	토스 인증서	신한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오피스텔	○						

* 단, 정확한 본인인증을 위하여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로 청약신청할 경우 청약통장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약통장 미가입자는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로 청약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7조에 의거 화성시 제 2026-건축과-분양신고-2 호(2026.06.17.)로 분양신고 처리 알림.
- 본 건축물은 화성시 2025-건축정책과-신축허가-35호(2025.01.23.)를 통해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임
- 공급위치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여울동 968-1
- 분양사업자, 시공업체, 분양대행사의 명칭: 분양사업자 : 교보자산신탁(주) / 시공업체 : (주)디에이건설 / 분양대행사 : (주)지오플랜
- 시행위탁자 : (주)동탄디벨로프
- 시행수탁자 겸 분양대금 관리자 : 교보자산신탁(주)
- 본 오피스텔은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의거하여 분양하는 사업으로 분양대금 관리자와 분양사업자는 교보자산신탁(주)로 동일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 지구 및 용도구역 : 중심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여부 : 해당 없음
- 공급대상물
 - 대지면적 : 대지면적 1,475.00㎡(오피스텔 대지지분:1,084.420㎡)
 - 건축물 연면적 : 13,703.070㎡(오피스텔 : 10,397.630㎡)
 - 건축물 용도 :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 건축물 층별 용도 : 지하4층~지하1층(주차장 등), 1층~3층(근린생활시설), 4층~13층(오피스텔)

- 공급규모 : 지하 4층 ~ 지상 13층 1개동 중 오피스텔 총 99실 중 15실
- 주차대수 : 126대 중 오피스텔 104대

■ 건축물 층별 용도

구분	용도
지하4층 ~ 지하1층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방재실 등
지상1층 ~ 지상3층	근린생활시설
지상4층 ~ 지상13층	오피스텔

■ 건축물의 대지에 관한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지역, 중심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교육환경보호구역 해당없음
- [택지개발촉진법] : 택지개발지구
- [수도권정비계획법] : 성장관리권역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 건축물의 내진설계에 관한 사항

가. 「건축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여부 : 확보

나. 「건축법」 제48조의3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내진능력 : I 등급(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지진구역계수(Z)	지반의 종류	중요도 계수(E)	내진설계범주	건물중요도	반응수정계수(R)
0.11g	S2	1.2	C	1	4

■ 준공예정일 : 2028년 08월 예정

■ 입주예정일 : 2028년 09월 예정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정은 추후통보)

■ 공급대상 및 공급규모

[단위 : 실, m²]

군	타 입	공급호실	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계약면적	대지지분
			전용면적	공용면적	소 계				
1군	A 1	3	49.780	21.503	71.283	4.307	35.152	110.742	11.551
	A 2	1	49.780	21.503	71.283	4.307	35.152	110.742	11.551
	B 2	1	53.630	23.584	77.214	4.640	37.871	119.725	12.444
2군	C	2	40.550	17.464	58.014	3.507	28.635	90.156	9.409
	D	2	36.770	16.008	52.778	3.181	25.966	81.925	8.533
	E	2	46.920	20.021	66.941	4.058	33.133	104.132	10.888
	F	2	44.240	19.006	63.246	3.827	31.241	98.314	10.266
3군	PH D	1	36.770	16.008	52.778	3.181	25.966	81.925	8.533
	PH F	1	44.240	19.006	63.246	3.827	31.241	98.314	10.266

- ※ 상기 호실별 대지지분은 오피스텔 해당 대지면적을 타입별 전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소유권이전등기 시 지적정리에 따라 대지면적 확정 시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수정리를 위한 오차는 일부 호수에 할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양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이익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 ※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경우에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대지지분의 증감을 제외한,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인한 소수점 이하 계약면적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습니다. 또한 정산하는 경우에도 정산금에는 별도의 이자를 가산하지 않습니다.
- ※ 오피스텔 테라스, 발코니는 서비스 공간으로 계약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며 테라스, 발코니 확장 등 구조변경은 불가합니다.
- ※ 면적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평형 환산방법: 형별면적(m²) X 0.3025 또는 형별면적(m²) ÷ 3.3058)
- ※ 전용면적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1항 3호에 따라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안목치수)을 기준으로 면적이 산정됩니다.
- ※ 상기 호실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부대시설 등 공용면적과 주차장, 관리실, 전기/기계실 등의 기타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상기 호실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 할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습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실, 원, VAT포함]

군	타입	층	공급 호실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50%)					잔금(40%)
				대지비	건물비	부가세	계	계약금 1차	계약금 2차 (10%-1천만원)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입주지정일
								계약 시	계약 후 30일 이내	(2026.11.02.)	(2027.02.02.)	(2027.11.02.)	(2028.02.02.)	(2028.05.02.)	
1군	A 1	4층	1	229,291,399	386,916,910	38,691,691	654,900,000	10,000,000	55,490,000	65,490,000	65,490,000	65,490,000	65,490,000	65,490,000	261,960,000
	A 1	7층	1	233,947,951	394,774,590	39,477,459	668,200,000	10,000,000	56,820,000	66,820,000	66,820,000	66,820,000	66,820,000	66,820,000	267,280,000
	A 1	10층	1	238,639,514	402,691,351	40,269,135	681,600,000	10,000,000	58,160,000	68,160,000	68,160,000	68,160,000	68,160,000	68,160,000	272,640,000
	A 2	5층	1	229,291,399	386,916,910	38,691,691	654,900,000	10,000,000	55,490,000	65,490,000	65,490,000	65,490,000	65,490,000	65,490,000	261,960,000
	B 2	8층	1	259,611,502	438,080,453	43,808,045	741,500,000	10,000,000	64,150,000	74,150,000	74,150,000	74,150,000	74,150,000	74,150,000	296,600,000
2군	C	7,8층	2	188,677,867	318,383,757	31,838,376	538,900,000	10,000,000	43,890,000	53,890,000	53,890,000	53,890,000	53,890,000	53,890,000	215,560,000
	D	6층	1	160,703,547	271,178,594	27,117,859	459,000,000	10,000,000	35,900,000	45,900,000	45,900,000	45,900,000	45,900,000	45,900,000	183,600,000
		11층	1	166,585,507	281,104,085	28,110,409	475,800,000	10,000,000	37,580,000	47,580,000	47,580,000	47,580,000	47,580,000	47,580,000	190,320,000
	E	5층	1	195,820,247	330,436,139	33,043,614	559,300,000	10,000,000	45,930,000	55,930,000	55,930,000	55,930,000	55,930,000	55,930,000	223,720,000
		7층	1	200,231,717	337,880,257	33,788,026	571,900,000	10,000,000	47,190,000	57,190,000	57,190,000	57,190,000	57,190,000	57,190,000	228,760,000
	F	9층	1	196,485,469	331,558,665	33,155,867	561,200,000	10,000,000	46,120,000	56,120,000	56,120,000	56,120,000	56,120,000	56,120,000	224,480,000
		10층	1	199,251,390	336,226,009	33,622,601	569,100,000	10,000,000	46,910,000	56,910,000	56,910,000	56,910,000	56,910,000	56,910,000	227,640,000
3군	PH D	13층	1	232,442,449	392,234,137	39,223,414	663,900,000	10,000,000	56,390,000	66,390,000	66,390,000	66,390,000	66,390,000	66,390,000	265,560,000
	PH F	13층	1	278,867,918	470,574,620	47,057,462	796,500,000	10,000,000	69,650,000	79,650,000	79,650,000	79,650,000	79,650,000	79,650,000	318,600,000

※ 본 공급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층, 향, 구조 등을 감안하여 차등 적용되어 분양가가 다르오니 청약 신청 시 견본주택 방문을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취득세,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및 그 외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이며, 해당 비용은 분양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각 실별로 지하주차장 및 건축설비실에 대한 금액이 분양금액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위치 지정이나 구분등기는 하지 않습니다.

※ 계약금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계약체결 시에 납부합니다.

※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 잔금은 입주지정기간 내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단, 「건축법」 제22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잔금 중 50%는 일주일 이내에 납부하고, 나머지 50%는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5일 이후에는 미납한 잔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본 오피스텔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된 판매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습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현장여건 및 주변환경,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전자파, 전자기장애, 분진발생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급금액 납부일정을 사전에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타 분양 및 계약조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을 준용합니다.

■ 청약신청 자격 및 유의사항

- 본 오피스텔은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분양광고일(2026.09.09.)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법인의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단,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과 법인은 대출 취급이 제한되거나 불가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자 본인이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은 1인 1실(건)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동일인이 2실(건) 이상 중복 신청하는 경우 청약신청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해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청약신청은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청약이 불가합니다.
- 한국부동산원은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신청 유형별(군) 900%의 예비당첨자를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예비당첨자 소진 이후 미계약 물량 발생 시에는 「건축물 분양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라 당사에서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예정입니다.

■ 청약일정 및 장소

구 분	청약접수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	당첨자선정 및 호수 결정방법
일 시	2026.09.14.(월), 2026.09.15.(화) (09:00 ~ 17:30) (은행창구 청약 시 은행 영업시까지)	2026.09.18.(금) 16:00 이후	2026.09.21.(월), 2026.09.22.(화) (10:00 ~17:00)	한국부동산원 전산프로그램 추첨에 의해 신청 군별 무작위 결정
장 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테라스99 동탄 견본주택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 537, 라스플로레스 B동 1층 1027호~1028호) ☎ 1599-9903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뱅킹 가입자는 청약신청금 납부를 위해 1일(1회) 이체한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PC 및 스마트폰 청약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위 모든 은행의 청약이 가능합니다.
- 법인은 인터넷 청약 불가하며, 청약통장 취급은행의 지점* 방문을 통한 청약만 가능합니다.
 - * 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KEB하나, 아이엠뱅크, 부산, 광주, 경남, SC제일, 전북 (제주, 씨티는 지점 방문접수 불가)

■ 청약신청 안내

구 분	내 용
이용안내	거래은행 인터넷뱅킹 가입(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보유)하신 분으로 거래은행 출금계좌에 청약신청금 이상의 출금 가능한 잔액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 (이체한도 확인)
이용방법 및 절차	(모든 은행 이용자)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① 접속 :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청약신청 →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도시형/민간임대' → 청약신청하기 ② 청약 : 인증서 로그인 → 주택명 및 군 선택 → 청약 신청 시 유의사항 확인 → 연락처 등(연락주소, 연락처) 입력 → 청약신청내역 확인 및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번호, 비밀번호 입력 →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 청약접수완료 → 신청내역조회 ※ 스마트폰앱으로도 가능(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청약접수 완료 기준은 17:30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완료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금 납부방법

구 분	청약신청금	내용
모든 군 공통	3,000,000원 (금삼백만원)	- 청약 신청 시 : 청약Home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납부 - 주택청약 참가은행 (KB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농협, 우리, SC제일, KEB하나, 아이엠뱅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씨티)에 입출금 통장 개설 후 청약신청금 이상을 예치하고 청약에 참가해야 함(인터넷 청약 시 거래은행 계좌에서 출금)

■ 은행창구 접수 시 구비서류(청약통장 취급은행 전 지점)

구 분		구비사항	
일반	본인 신청 시	- 청약 신청서(청약통장 취급은행 지점 창구에 비치) - 청약신청금 - 청약신청금 환불 받을 통장 사본(청약신청자 명의)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본인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사실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오피스텔청약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법인 신청 시	- 청약신청서(청약통장 취급은행 지점 창구에 비치) - 법인 인감 도장 및 법인 인감증명서 1통(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1통 제출) -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 대표이사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표이사가 내국인이 아닌 경우 :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		

※ 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KEB하나, 아이엠뱅크, 부산, 광주, 경남, SC제일, 전북 (제주, 씨티는 지점 방문접수 불가)

- 은행창구 청약접수는 상기 구비서류가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하며, 청약신청이 완료된 이후에는 구비서류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청약신청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아니하고 신청자가 기재(입력)한 내용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따라서 신청자가 신청정보를 착오로 기재하여 당첨된 경우,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에게 있으며, 사업주체 및 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테라스99 동탄 건본주택에서는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는 당첨자 선정 시 신청자격 및 신청건수에 대한 확인은 하지 않으며,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사업주체는 계약체결 시 동일인의 중복 당첨을 모두 무효처리하오니 신청 시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중복 당첨으로 인한 당첨 탈락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제출서류는 최초 분양광고일(2026.09.09.)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입력)사항으로 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사업주체에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청구하여 신청자격 유

무를 대조, 확인 후 일치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고 전액 환불됩니다. 청약금 환불은 청약신청 시 신청자가 입력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합니다.(단, 청약 시 제출하신 환불계좌 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일 경우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추첨 및 당첨자 발표

- 추첨 : 한국부동산원 전산 추첨을 통해 신청 군별 호수를 무작위로 전산추첨하여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 예비당첨자 선정 : 신청 군별 900%를 무작위로 예비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확인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하여 전화로는 확인이 불가하며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당첨자 발표 일시	당첨자 발표 장소
2026년 09월 18일(금) 16:00 이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 청약당첨조회 →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도시형/민간임대 당첨조회 메뉴에서 조회일 기준 최근 5일 이내 당첨자 발표한 단지에 한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 스마트폰앱으로도 가능(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추첨 방법 및 안내사항

호실 결정 방법	• 한국부동산원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청약 신청한 군내에서 타입 · 호수는 무작위로 추첨 결정함.
기타사항	• 군별 900%의 예비당첨자를 한국부동산원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정당계약 및 예비당첨자 소진 이후 미계약 호실 발생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수익계약으로 분양합니다.

■ 청약신청금 환불방법

구분	환불방법
환불대상	• 당첨자(예비당첨자) 및 낙첨자를 포함하여 신청자 전원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 이후. 단,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제외
인터넷 청약자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에 청약자가 신청 시 신청자가 입력한 본인 명의의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로 자동 환불
은행(창구)청약자	• 자동환불 신청자 : 청약 시 접수은행에 개설된 청약자 본인명의 계좌로 자동환불을 신청한 자는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에 자동 환불 • 자동환불 미신청자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 이후에 청약 접수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환불 받아야 함

- 청약 시 환불 신청한 계좌가 환불계좌 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일 경우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당첨자의 청약신청금도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고 일괄 환불되며 환불금액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불계좌 명의자와 청약자 명의가 동일해야 환불이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금에 대한 환불 시 기간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계약기간 및 장소

계약체결 기간	계약체결 시간	장 소	계약금 납부
2026.09.21.(월)~2026.09.22.(화)	10:00~17:00	테라스99 동탄 건본주택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 537, 라스플로레스 B동 1층 1027호~1028호)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무통장 입금

- 아래 분양대금 납부계좌 외 계좌입금 또는 현장에서 직원 등에게 현금 납부하는 경우는 분양대금 납부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예비당첨자 선정 일정 및 계약체결 방법 등 은 당첨자 계약 체결 기간 이후 개별 통보 예정입니다

■ 계약금 및 분양(공급) 금액 납부계좌

※ 계약자분들께서는 분양대금(중도금 및 잔금 포함)을 반드시 아래의 지정된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입금(호실과 계약자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아래 지정된 분양대금 납부계좌 이외 계좌에 입금 또는 현장 직원 등에게 현금 납부하는 경우에는 분양대금 납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분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납부계좌 (계약금, 중도금, 잔금)	KB국민은행	522301-01-445035	교보자산신탁㈜	무통장 입금 시 호실과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단,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SMS/문자 등으로 일정 안내가 가능하며,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수분양자는 반드시 본인 확인 하에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추가선택품목 포함)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하더라도 이에 따른 별도의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중도금 대출을 받지 않고 직접 자금을 조달하여 납부하더라도 이자 지급 등의 별도 혜택은 없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추가선택품목 포함)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연 12%, 변동 시 별도 안내)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계약자의 착오 입금 등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는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타행 계좌이체 수수료는 계약자 본인 부담입니다.
- 일부 입금 후 계약 미체결 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계약 시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본인 계약시	• 계약금 납부 영수증(무통장 입금증)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분제외) 등)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사본 1통 또는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1통 -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사본 1통 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계약자 인감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일 경우 제외) • 계약자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or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통 (용도 : 오피스텔계약용, 설계변경 동의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본인만 인정되며, 제3자 대리인 접수 불가)
법인 계약시	• 계약금 납부 영수증(무통장 입금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 법인인감도장(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1통) • 법인인감증명서 2통(용도 : 계약용, 설계변경 동의용) • 법인등기부등본 1통 • 법인 대표이사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분제외) 등) 사본 1통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사본 1통 또는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1통 -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사본 1통 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1통
제3자 대리계약시 추가사항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 대리 신청(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하며, 상기 본인, 법인 계약시 구비서류 외에 아래 서류 추가 제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오피스텔 계약 위임용).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나 이에 관한 공증증서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건본주택 비치] •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분제외) 등)
기타사항 (인지세)	• 전자수입인지 사본(우체국, 은행방문 또는 온라인 전자수입인지 사이트(e-revenuestamp.or.kr)에서 구입 후 종이 출력 ※ 아래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참조

※ 상기 제증명서류는 분양광고일(2026.09.09.)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 없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에서 임의 분양할 수 있습니다.
- 청약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위 사유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후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부득이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공급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배치구조 및 호실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이후 이와 관련한 어떠한 민원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체결 시 사업부지, 평면도, 배치도, 건본주택 내 설치된 모형 등을 통해 현황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사기간 내 본 건축물의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임의의 설계변경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경미한 설계변경에 관해서는 사업주체에게 위임하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타 관리비 및 주차장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관리규약(안)을 준수하며, 본 계약 체결 시 해당 관리규약(안)을 배부하고 수분양자의 동의를 득할 예정입니다.
- 계약 체결 시, 청약 당첨자의 명의로만 계약이 가능하며, 공동명의로는 불가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주소 또는 연락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테라스99 동탄 고객센터(1599-9903)로 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각종 통지서 미수령 등)은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일반과세자)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또한 이를 해태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분양사업자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 영업소를 두지 않은 외국법인 포함)이 본 오피스텔을 계약할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9-42조에 따른 비거주자(외국법인 포함) 신고 대상자는 분양대금 납부 전 사전에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특히 외국법인의 경우 본국의 법인격 증명서류, 공증 및 아포스티유 등 별도의 구비서류 준비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해당 계약자는 반드시 계약 전 본인의 신고 대상 여부 및 필요 서류를 관계기관(은행 등)에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신고 또는 신고 지연에 따른 모든 책임(과태료, 계약 해제 등)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오피스텔 입주시기와 근린생활시설의 입점시기는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분양 안내, 유의사항 등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계약 전 완전히 이해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이해하지 못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기타 계약 조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준수합니다.

■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세 문서로, 인지세 납부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최초 계약에 한해 사업주체와 수분양자는 인지세의 1/2씩을 각각 부담합니다. 수분양자가 인지세 전액을 우선 납부하며, 사업주체는 인지세의 1/2을 수분양자의 입주 잔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산합니다. 단, 납부 지연, 미납, 과소 납부 및 인지 분실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과 불이익은 수분양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납부세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 부동산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계약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제 거래가격(분양대금+프리미엄)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취급금융기관(우체국, 은행) 또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126/인지세 관련) 및 금융결제원(☎1577-5500/전자수입인지 사이트 운영, 재발행 등)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출력 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발행 불가)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안내

- 본 오피스텔의 중도금 대출금은 사업관계자, 시공사, 중도금 대출금융기관과 체결되는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하여 시행위탁자가 지정하는 중도금 대출기관에서 중도금 대출 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동탄디벨로프가 부담(납부)하며(단, 시행위탁자가 지정한 중도금 대출기관의 중도금 대출이자만 해당하며, 관련정책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비용을 제한받아 계약자가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한 중도금에 대한 대출이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그 외 기타 사항은 대출금융기관의 계약자 대출 약정에 따릅니다.
- 대출기관 : 추후 별도 공지 예정(계약체결 이후 시행위탁자가 지정한 은행(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 단, 정부의 대출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 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사전 확인하여야 합니다.
- 대출금액 : 대출금융기관에서의 대출은 계약금을 완납한 계약자에 한하여, 중도금대출이 가능할 경우 총 공급금액의 50% 범위 내 중도금 대출을 알선합니다.
(단, 시행사가 지정한 대출금융기관에서 계약자 명의의 중도금 대출을 실행한 경우에 한함)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대출제한 등) 변경, 국제금융 위기상황 발생, 대출금융기관 미확보 등으로 인하여 집단대출 승인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대출이 제한되거나 불가할 경우 분양대금을 계약자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납부를 당사가 알선한 대출은행에서 대출로 진행할 경우, 대출은행의 사정으로 대출 신청 및 대출 실행일자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주는 변경된 중도금 납부일정 을 서면 통보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변경된 중도금 납부일정에 따라 대출 신청 및 중도금 금액 납부를 이행하여야 하며, 미진행 시 계약서 조항에 따른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직접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대출에 필요한 제반서류 제출, 비용 납부 등의 절차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인지대, 보증수수료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계약자가 직접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의 보증에 의하여 용자가 알선된 경우 제3자가 계약자의 분양대금반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압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는 보증인인 사업주체에 대하여 즉시 사전상환의무를 지며, 또한 계약자가 대출기관에 대해 이자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자의 여신거래약정 위반, 기타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인하여 대출금융기관이 사업주체에게 보증채무의 이행 또는 대위 변제를 요구하여 사업주체가 이를 이행한 경우 분양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계약자가 기 납부한 분양대금에서 이를 공제한 후 반환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 신청 시 대출가능 여부 및 금액 등 대출과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한 최종 확인 및 대출 신청, 실행 및 유지는 계약자의 전적인 책임으로 하며, 대출금 신청 시 계약자의 신용불량 또는 타행 대출 등 계약자의 대출 결격 사유로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에 발생하는 지연이자 및 손해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중도금 납부를 당사가 알선한 대출은행에서 대출로 진행할 경우, 중도금 납부기일로부터 최소 2주 전에는 대출을 신청하여야 하며, 대출 신청 기간 이내 미 신청하여 대출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중도금 약정일로부터 연체료가 발생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않거나, 입주지정기간 전에 대출받은 중도금을 상환하는 등의 이유로 인하여 시행위탁자에게 대출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계약자는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협약 조건에 의거하여 계약금(총 분양금액의 10%)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며, 계약금(총 분양금액의 10%) 미납 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령 계약금을 납부하였더라도 입금자명이 '호수' 또는 '계약자성명'이 아니라 확인이 불가할 경우 계약금 미납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 불이익은 계약자에게 있음.)
-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였더라도 계약금 미납, 보증서 발급 불가, 대출한도 부족, 신용상의 문제 등 대출 결격사유가 발생할(또는 발견될) 경우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출이 실행되지 않음에 따른 불이익(분양대금 납부 연체, 중도금 대출 기한 이익의 상실 등)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 시 계약자의 신용등급이 변동될 수 있으며, 중도금 대출은 금융기관별 인당 건수가 제한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만료일이 경과하도록 중도금대출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체와 금융기관 간 사전 협의한 대출기간이 만료되어 신용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사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 등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무상품목(옵션) 안내

품목	위치	내용	타입
가전	주방	콤비냉장고(엘지)	전 타입
		김치냉장고(엘지)	
		기능성오븐(엘지)	
		3구 인덕션(엘지)	
	욕실	일체형 비데	
	거실	10인치 월패드(정전식)	
	거실	드럼세탁기(엘지)	
	드레스룸	천장 제습기(그렉스)	A 1,A 2,B 2,E,F,PH F
	현관	에어브러쉬(신발장) + 에어샤워(천장), (그렉스)	PH D, PH F
마감재	주방	MESON'S ITALY (하부장/키큰장/냉장고장/아일랜드)	전 타입
		주방 상판(세라믹타일)	
		주방 벽(세라믹타일)	
	욕실	엔지니어드 스톤마감(상판)	
	현관	엔지니어드 스톤마감(디딤판)	
	발코니,테라스	자기질 타일(고급 발코니 디자인)	
	발코니,테라스 벽	천연 화강석(발코니, 테라스 벽)	
	거실, 침실2	바닥재(포셀린 타일)	PH D,PH F
	주방	세라믹 타일 마감(주방 벽 + 상판)	A 1,A 2,B 2,C,D,PH D
	침실2	유리 슬라이딩 도어(투명 강화유리)	A 1,A 2,B 2,PH D,PH F
	다락	다락 고급 바닥 마감재(카우라 카페트)	PH D,PH F
	계단	계단판(대리석)	PH D,PH F
	거실	아트월(포셀린 타일)	PH D,PH F

■ 추가선택품목 납부 일정

구분	계약금	잔금
납부 시기	계약 시	입주 시(입주지정기간 내)
납부 비율	10%	90%

※ 추가선택품목(추가선택품목 계약은 오피스텔 공급계약과 동시에 진행합니다)

■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

구분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납부계좌	KB국민은행	522301-01-445077	교보자산신탁(주)	무통장 입금 시 호실과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 바닥재

[단위: 원, VAT포함]

구분	설치위치	타입	설치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 시	입주지정일
포셀린 타일	거실/침실2	A 1,A 2	1,760,000	176,000	1,584,000
		B 2	1,870,000	187,000	1,683,000
		C	1,210,000	121,000	1,089,000
		D	1,100,000	110,000	990,000
		E	1,430,000	143,000	1,287,000
		F	1,320,000	132,000	1,188,000

※ 미선택 시, 강마루로 시공됩니다.

■ 청정시스템

[단위: 원, VAT포함]

구분	설치위치	타입	설치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 시	입주지정일
청정시스템 (그렉스)	천장(에어샤워), 신발장(에어브러쉬)	A 1, A 2, B 2, C,D,E,F	957,000	95,700	861,300

■ 유리 슬라이딩 도어

[단위: 원, VAT포함]

구분	설치위치	타입	설치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 시	입주지정일
유리 슬라이딩 도어 (투명 강화유리)	침실1	A 1,A 2	1,760,000	176,000	1,584,000

※ 미선택 시, 일반 도어가 시공됩니다.

■ 추가선택품목 계약시 유의사항

- 추가선택품목 비용은 분양가격과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해당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판매가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설치공사는 분양광고 시 공개된 품목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판매가격은 기본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으로서, 수분양자는 별도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위약금 등에 대한 상세내용은 추가선택품목 계약서에 기재하고 체결하오니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설치 시점에 이르러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단종(성능 개선, 디자인 변경 등의 사유) 시 동 제조사의 동급 이상 제품으로 변경 제공될 수 있으며, 제조사의 폐업, 부도,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제조사의 제품 공급이 불가능할 경우 동급 이상의 타 제조사 제품으로 변경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의 발생 시 별도의 동의서는 징구하지 않으며, 변경 제품을 확정하기 전에 변경 사유 및 내용을 계약자에게 통보합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공정상(발주 및 설치)의 사유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공급계약이 불가하며 상품 구성, 제품 모델, 디자인(색상포함), 설치 위치, 판매 금액에 대해 교체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 상기 추가선택품목은 본 오피스텔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되는 품목으로써 상품구성, 제품모델, 디자인(색상포함), 설치위치, 판매가격에 대해 교체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견본주택 및 홍보물상의 이미지와 실제 입주 시 느끼는 분위기, 마감색상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품질개선을 위하여 견본주택, 홍보물 내용의 마감과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계약에 따라 인접하는 가구, 마감재, 벽체, 물딩, 걸레받이, 커튼박스, 등기구, 스위치 및 콘센트 등의 위치와 수량, 형태가 홈페이지 홍보물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중 완제품으로 시공된 부속품의 경우 제조사 서비스 내용과 하자는 하자담보 책임 범위에서 제외되며, 하자 발생 시 제조사 보증 책임에 따라 처리됩니다.
- 추가선택품목 상세내용은 본 분양광고문 표기에 한계가 있고, 전 품목 전시 불가 등의 한계가 있으므로, 계약체결 시 상세한 설명과 확인 후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2명 이상에게 전매(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가 변동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6조의4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동법 제10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추후 관련 법령의 변경으로 전매에 대한 사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이전 분양권 권리양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가능하나, 사업주체에 대한 채무이행 및 당사가 요구하는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 입주예정일

- 입주예정일 : 2028년 09월 예정
- 입주예정일은 공정의 변경, 조기준공,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발굴, 정부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의 사유에 따라 앞당겨지거나 지연되는 등 변경될 수 있으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및 분양계약서 등에 따라 입주예정일이 통보된 경우 입주예정일의 변경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될 수 없으며,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시 분양사업자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선정된 관리주체와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추후 당사가 안내하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입주지정기간 내에 입주할 경우 실입주일 또는 잔금납부일 또는 입주증발급일 중 빠른날) 오피스텔 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입주여부와 상관없이 일반관리비, 오피스텔관리비(전기/수도/난방 등 포함) 및 제세공과금 등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입주지정 기간 내 입주 시에는 실입주일 또는 입주증발급일 중 빠른날로부터 관리비가 부과되며, 입주 전 인테리어 공사가 불가 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내에 잔여 분양대금(중도금 및 잔금), 연체료 등을 완납하고, 분양사업자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 및 비용(중도금 대출 상환영수증 또는 중도금대출에서 담보대출로 대환되는 은행확인 서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 및 비용, 선수관리비 납부영수증,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 영수증, 중도금 대출이자 납부영수증 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또는 납부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0의2호에 따라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 일자를 통지하여 입주자 사전방문행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통지는 우편으로 하고, 입주자 사전방문행사 미참석자에 대한 별도의 사전점검은 없습니다.

■ 일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분양광고의 제반 내용 및 건립된 견본주택은 건축허가 도서를 기준으로 제작 되었으며, 향후 인허가 내용의 변경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의 주거 공용면적(계단실, 코어, 부대시설 등) 및 기타 공용면적 (기계/전기실, 펌프실, 환풍, 주차장 등)은 호실별 전용면적 비율에 비례하여 산출 배분됩니다.
- 면적 계산상 소수점 반올림방식 차이로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경우에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인한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습니다.
- 계약 전 단지 여건(기반시설 위치, 분묘, 송전탑 등 혐오시설 유무, 주변 개발현황, 소음, 조망, 일조 등 단지 주변 환경)에 대해서는 각종 홍보물 및 모형과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단지 주변현황을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의 호실 내부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추가선택품목, 연출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표현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 등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되므로,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일 이후 관계 법령 또는 조례의 지정·개정,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도시 기반시설 계획 변경 등으로 규제 내용이 강화되어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단지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내공기질관리법」 제9조에 의거 오피스텔(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본 공사 진행 중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개선을 위하여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설계변경은 동의를 얻은 것으로 갈음하여 사업주체가 변경 시공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0호2에 따라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 일자를 통지하여 입주자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통지는 우편으로 하고, 입주자 사전방문행사 미참석자에 대한 별도의 사전점검은 없습니다.)
-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입주증 발급전 이사나 인테리어 공사는 불가합니다.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개인적인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단위실 내·외부 파손 및 훼손사항은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특히, 전기 인테리어 공사(배관, 배선, 자재변경)로 인해 홈네트워크 시스템 연동이 안 될 시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공급 계약해지(해제)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인허가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계약자의 경우 계약면적 외의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는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건립되는 복합단지로서 별도 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 지분에 따른 별도의 물리적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등기를 별도로 하여야 함)
- 인허가 및 실시공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출입구, 창틀모양 및 색채, 난간의 디테일, 축벽문양, 입면, 환기용캡 등)은 현장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도로, 공원 등 사업부지 외의 개발계획 및 기반시설은 국가기관, 지자체의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에 따라 설치하므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지연될 수 있으며,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인근지역의 개발계획으로 향후 공사중 먼지, 소음, 진동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본 사업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인접 지역 개발사업 등으로 개설되거나 계획 중인 도로는 본 사업과 무관하며, 건본주택과 홈페이지, 분양관련 홍보물에 표현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CG 등에 표시된 주변 도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인근 군부대 항공기에 의한 소음 발생지역으로, 사전에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기 바람, 당첨자는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축물 관련

- 분양 관련 홍보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 각종 홍보물 및 건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 주변현황 및 기반시설은 실제와 다를 수 있고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축물의 명칭은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준수를 위해 입주 시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하며,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되고 제공집기 및 마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 계약자의 경우 오피스텔 계약면적 외의 근린생활시설 등 오피스텔이 아닌 기타 시설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각 실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건본주택에서 설계도면 및 모형 등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건축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옥탑 및 축벽에는 조형물 및 경관조명 등이 설치될 수 있어 최상층 호실의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운영·유지·보수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에어컨 냉각탑이 옥상층에 설치되며, 인접 호실은 소음, 진동, 열기 등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건축물의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계약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축물 내 호실 번호는 입주 시 본 공고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설계계획 상 이사 등은 엘리베이터 이용을 원칙으로 하며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단위실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지상 1층~지상 3층에 설치되어 있으며 인접한 저층호실은 입주하는 업종에 따라 소음,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입주민 및 외부인의 통행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별도 산정되어 있으나, 단지 내 오피스텔 부지와 별도의 대지 경계선으로 구획되지 않으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건축물 내 지하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완속 및 급속 충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운영·유지·보수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대지경계 및 대지면적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시 대지경계 및 대지면적 확정에 대하여 입주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 시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부대시설 중 일부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간(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입주자원을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를 위한 공간으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이 지하4층에 설치되며 지하 1층에 관리사무실, MDF실이 설치됩니다.
- EPS/TPS실과 지하, 지상, PIT 또는 옥탑에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안테나/중계설비가 설치될 예정이며 향후 통신 상태에 따라 중계장치 등이 추가로 설치될 수 있음으로 이에 따라 차후 소음 및 진동 또는 전파의 교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전파상태, 인허가, 이동통신사 협의 결과에 따라 설치 위치 변경 또는 설치개소가 증감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 견본주택에 설치된 화재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의 위치 및 수량은 견본주택 자체의 소방 대책으로 설치된 것으로 본 공사시 「소방기본법」에 맞추어 시공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환기유닛, 환기디퓨저, 에어컨, 온도조절기, 및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실시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조명기구, 홈네트워크, 단위실 통신단자함, 전기분전반 및 각종 배선기구 설치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설치된 에어컨은 냉·난방 사용을 위해 냉·난방 겸용 제품이 설치되었으며, 본 공사 시 에어컨은 냉방용 제품이 설치되오니 계약 시 제품 모델 등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은 일부 선택품목을 포함하여 설치되었으며, 타입별 제품품목이 상이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 건축물 및 견본주택에 적용된 모든 자재는 시공시기, 생산여건에 따라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동급의 성능을 가진 타사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등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는 A3, B3 타입이 건립되어 있으며, 그 밖의 미건립 타입은 모형 또는 카달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청약 및 계약전에 평면형태, 가구배치, 실면적등 견본주택 설치 타입과 다른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청약 및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시공 시 적용되는 마감재의 범위는 견본주택의 현관문을 경계로 단위실 내부에 한합니다.

■ 분양홍보물 관련 유의사항

- 분양광고 이전 제작, 배포된 분양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주변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등의 예정사항은 개발계획의 변경,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관련사항을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분양홍보물 및 견본주택 등에 표현된 옥상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측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고사인, 외벽마감, 식재, 바닥포장, 단지내조경, 각종 시설물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광역도로 등 광역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업주체 및 시공자와는 무관합니다.
- 각종 매체를 통한 분양홍보물(인터넷, 신문광고 등), 견본주택에 구현·표현된 내용(단지조경 및 시설물 등의 CG, 단지구획선 등) 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는 이해를 돕기 위한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을 위하여 제작한 제작물은 광고·홍보물이므로 단지 및 지구의 불리한 요소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공급안내서, 분양계약서를 살펴보고 현장을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홍보물의 조감도 및 배치도 상의 주변 토지 및 건물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계약 전에 현장답사 및 사전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홍보 유인물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 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 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당사와는 무관하며, 해당 사업주체, 국가기관, 지자체 및 기타 기관의 사업으로 추진 중 변경, 지연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실 평면도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 여부를 필히 확인 바랍니다.

■ 설계관련 (건축, 전기, 설비)

- 지상 1~3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어 소음으로 인한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남측에 급배기용 DA가 설치되어 소음이나 진동, 먼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변 건물에 의해 조망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단실 및 복도 내 창호는 일부는 고정창, 일부는 프로젝트창으로 적용되며, 프로젝트창의 적용 위치는 층별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관리사무소는 지하1층에 설치됩니다.

- 옥상에는 냉각탑, 근린생활시설 주방배기, 제연환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인접 호실 및 하층 호실에 소음 및 진동 등의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단지계획은 본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시공 시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구성 및 건축 이용 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상하수도, 지역난방, 전기, 통신 등 각종 인입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 도로, 조정시설, 자전거 보관소, 지하주차장 주차램프, 주출입구 등과 인접한 실은 소음, 불빛, 분진 등에 의한 생활권과 사생활 침해 등 각종 환경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옥탑층 및 상층부 입면에 의장용 구조물, 설비 통기배관, 발전기, 연도, 고가수조, 경관조명, 위성안테나, 공청 안테나, 이동통신 중계기, 항공장애등, 피뢰침 및 축리 피뢰침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냄새·사생활 침해, 조명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요 구조체는 정밀구조계산에 따라 최적화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내력벽은 비내력벽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장재 마감 사양 및 적용 비율은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및 상품개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배치도 상에 표현된 DA의 위치, 마감, 수량 및 크기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일부 DA는 건물에 매립되어 소음, 냄새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스프링클러 배관 관경 및 기준 개수 등 소화 시설물의 기준은 수리계산에 의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조정 공간의 형태, 도로의 선형, 포장 계획, 세부 식재 위치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공간에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발전기 연도 등)이 노출될 수 있으며, 단지 내 통행로 등에 인접할 경우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공용공간에 의해 발생하는 관리유지·보수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지상4층 하부 PIT층은 오피스텔 관련 설비가 설치되는 공간으로, PIT층의 유지/보수/관리 시 발생하는 비용은 공용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되며 전용하여 공간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 사용승인 후 조정유지관리 의무는 관리주체 및 입주자에게 있으며, 유지관리 소홀로 인한 조정수 고사 및 조정 하자는 법정 보증기간이 경과하면서 시공사에 책임이 없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 등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합의하였습니다. 단지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가 설치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통신설비 설치 예정위치 : 중계장치 지하층 EPS(지하1층)
- 주동 및 근린생활시설 상부에 옥상조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조정계획은 옥상의 환경을 고려해 실시설계 및 시공시 확정됩니다.
- 외벽에 입면 디자인을 위한 돌출부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실의 외벽 및 외부공간, 지붕 등에 장식용 구조물 및 부착물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건물의 외관 디자인(색채, 줄눈 계획, 입면 패턴, 마감재, 옥상 구조물, 경관조명, 사인계획 등), 공용부 디자인(E/V홀, 출입구, 지하층 출입구, 필로티, 캐노피, 주차장 램프, 부대시설 등), 외부 시설물(DA, 자전거보관소, 쓰레기보관소, 등), 조경 디자인 BI 위치 및 내용, 난간의 형태 및 재료, 용벽 디자인 등은 설계 및 인허가 과정, 발주처 협의에 따라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당사의 고유한 업무 영역으로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 옥상, 공개공지 및 조정 외벽에 경관조명, 조형물 및 사인 등이 설치되어 일부 실 일조,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LED조명으로 인하여 인접 실은 빛반사로 인한 눈부심 소음 등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오피스텔의 BI 및 단지명은 시공사 및 시행사 협의에 의해서 형태 및 위치를 결정하며, 계약자 요구에 의해서 변경될 수 없습니다.
- 실외기실, 냉각탑, DA 등 그릴 및 루버가 설치되는 부분의 재질, 색상, 간격 및 사양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옥상구조물 상부 및 내부면은 도장시공을 하지 않습니다.
- 일부 호실은 E/V 도어나 계단실 도어와 인접해 있어 통행에 간섭이 있을 수 있으니 계획 현황 계약전 확인 바람에 해당 사항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내·외부에 시공되는 석재는 자연석일 경우 색상, 밝기 등 차이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이는 하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지하주차장, 필로티에는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해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합니다.
- 공용부위 조명 및 경관조명, 보안등, 조경용 조명, 싸인용 조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저층부 및 고층부 실은 가로등(보안등) 및 경관조명에 의한 야간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와 인접한 실은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계실, 환풍 및 이와 유사한 기계 설비 장치가 설치되는 실에 인접한 곳에서는 장비로 인한 소음, 진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관, 배선 장비 등이 노출 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은 지하1~4층 오피스텔 104대, 근린생활시설 22대(경차 및 장애인 주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기차 주차구역 포함)로 계획되어 있으며 지하1층 주차장은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이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현장여건에 따라 전기차 주차구획과 충전설비의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또한 충전설비 설치 공간으로 인해 일부 주차구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행위에 의한 과태료 부과/민원 (각종 분쟁 등)은 당사와 관련이 없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구조 형식상 지하주차장의 동 작하부와 기계실, 헬륨, 및 이와 유사한 설비가 설치되는 공간에 인접한 주차구획은 기둥 및 벽으로 인하여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화재안전기준에 의거 옥내소화전의 배치상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차구획은 차량도어 개폐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설치되어 기기 가동시 주차장 배기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구조는 RC구조로 공사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피트(PIT)공간의 구획, 높이 및 면적, 비내력벽의 두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의 일부 구간은 각종 배관, 배선, 장비 등의 간섭으로 통행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의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은 인허가 도서에 준해 설치되며, 주차 차로 및 출입구의 유효높이는 층별로 상이하야(지하1층 : 2.3m, 지하2층~지하4층 : 2.3m) 해당 천장과 초과 차량은 출입할 수 없으며, 주차에 사용되는 부분의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최소 2.1m로 동일합니다.
- 지하 최하층에 집수정 및 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 호실은 소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용 쓰레기분리수거장은 지하1층에 설치되며 이로 인해 일부 실은 냄새 및 소음, 분진이 발생할 수 있고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같은 타입이라도 면적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며, 건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 대칭이 될 수 있습니다.
- 일부 단위실은 공사 시행 중에 품질 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으며 추후 해당 단위실은 보상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실의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단위실의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 습관에 따라 샷시 및 유리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나,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타입별로 제공 품목 및 선택 가능한 유상옵션 항목에 차이가 있으니 카탈로그 등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실 내 단위실분전반 및 통신단자함 위치 및 가구/선반의 배치, 주방 싱크대 수전위치, 현관문 도어의 방향은 좌우 단위실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욕실 및 세탁실 문턱높이는 물 넘침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욕실화의 높이와 상관없습니다.(문 개폐 시 걸릴 수 있습니다.)
- 외벽 및 단위실 간벽 등 단열설치 부위의 결로 발생으로 인한 하자방지를 위하여 동일한 타입이라도 부분적으로 벽체구성 및 마감의 바탕이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 실시공 시 단위실 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창호의 문 열림 방향, 날개벽체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실 내 창호는 인테리어 마감, 팬코일유닛 등의 간섭을 고려하여 창호 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공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가구의 경우 전기배선 및 마감재 설치, 기타사유와 관련하여 설치완료 후 이동이 불가합니다.
- 본 오피스텔은 각 실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 및 가구 등은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현관, 발코니 등에는 바닥난방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실간 벽체에는 공사를 위한 작업통로가 설치될 수 있으며, 작업 완료 후 조적, ALC블럭 또는 건식벽체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은 전열교환기가 천장 노출형으로 설치되며, 가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별 에어컨이 아닌 중앙냉방방식의 팬코일유닛이 설치 됩니다.
- 건본주택과 인·허가 도면이 상이한 경우 건본주택이 우선됩니다.
- 실 내부 테라스는 천정이 오픈되어 있는 구조로 외기에 노출되고, 확장이 불가합니다.

■ 단위호실 관련

- 오피스텔 타입 및 실에 따라 적용되는 창호 및 하드웨어(손잡이 등)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현장 여건 및 입주자 사용성 개선을 위해 목문의 사양(문틀 및 문짝의 폭, 높이, 재질, 개폐방향,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창호에 설치되는 방충망의 형태는 본 공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겨울철 밀폐된 생활 환경 속에서 음식 조리, 가습기 사용, 실내 화분, 빨래 등으로 인해 실내 상대 습도가 높아지는 경우에는 창호 유리면 및 창틀 주변에 결로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자연환기 또는 환기 시스템을 작동하여 결로 현상을 예방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부 호실에 소방관 진입창이 적용된 창호는 비상시 소방관 진입을 위해 유리를 파쇄합니다. 창에는 소방관 진입창 표시가 부착됩니다.
- 호실 내에 설치된 배연창에는 방충망이 설치되지 않으며, 개폐를 위한 기계장치가 부착되어 미관을 해칠 수 있으며, 버튼을 통해서만 개폐가 가능합니다.(안전을 위해 열림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건축법 시행령 51조에 의거 1개소에 설치된 배연설비로 화재 시 배연창호가 개폐되며 환기목적으로 사용 시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배연설비의 색상 또는 형태,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설비 설치로 인해 창호 프레임에 타공이 될 수 있습니다.

- 배연창 설비가 설치됨으로 인해 입주 후 커튼 및 블라인드 설치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배연창 설비의 임의 제거 및 변경 등의 행위는 할 수 없으며, 위반시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물 내, 우수처리 및 미관개선을 위해 테라스 내에 마감기둥이 시공 될 수 있으며 이로인한 호실 조망권 간섭 또는 침해 될 수 있습니다.
- 테라스의 수전, 바닥배수구 위치, 바닥 마감재의 색상, 재질 및 패턴, 천장 마감재 재질 및 색상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접호실의 환기구(주방배기, 욕실배기, 전열교환기 급/배기)에 의해 테라스 내에서 냄새 및 소음에 의한 환경권 침해가 될수 있으며 위치 및 개소는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계소방법에 의해 다락 내 천장에 소화설비(자동화재탐지기, 스프링클러 등)가 노출되어 설치됩니다.
- 단위실 마감재 안쪽(천장, 벽체)에는 전기, 통신, 소방 시설물을 위한 배관, 배선, 케이블 및 기타 부속품들이 일부 노출시공 될 수 있습니다.
- 각 실의 스위치 및 콘센트의 색상, 규격 및 설치위치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호실 내 배선기구(스위치, 콘센트), 전자식스위치, 조명기구, 월패드, 통신 단자함, 분전반의 위치 및 수량은 단위실 평형, 타입, 옵션, 아트월 위치 등에 따라 변경됩니다.
- 단위실 내 조명기구, 홈네트워크 관련 제품, 분전함, 통신단자함, 배선기구류의 설치 위치는 본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홈네트워크 관련 제품의 경우, 본 시공시 설치 시점에 따라 일부 디자인 및 기능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호실에서 사용하는 대용량 전열기기로 인해 순간 전압강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조명기구 및 타 가전제품의 작동 이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특정회사 제품의 문제로 인지하고 제조사에 A/S 요청을 해야 합니다.
- 가구 내부에 콘센트가 설치되는 경우, 해당 가구장 내 수납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전원선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호실 내부 마감재, 가구, 전기, 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호실 내부 전기, 설비 공사상 일부 노출배관의 시공이 불가피할 경우 실사용 면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기본 제공되는 계약용량 및 분전설비 외에 계약자에 의해 증설되는 전기용량, 배관 및 배선 등은 직접 공사 및 원상복구 해야 합니다.
- 침실 내 도어 후면, 신발장, 드레스룸 등 벽면 분전반, 통신단자함 배관라인(보통 수직형성) 구간에 대하여 못질 또는 브라켓 고정 등 벽체 파손행위는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 오피스텔은 지역난방 열원을 사용한 중앙공급방식이 적용되며 여름철 지역난방을 이용한 흡수식냉동기를 가동하여 중앙냉방이 제공됩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온도조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난방은 지역난방 열원을 이용한 바닥 복사난방으로 설치되며, 냉방은 지역난방 열원을 이용하여 생성된 냉수를 활용한 천장형 FCU(팬코일유닛)가 설치됩니다.
- 본 오피스텔은 여름철 중앙 냉방방식을 사용하여 각 실내에서 냉방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냉동기 및 냉각탑이 가동되어 기본요금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욕실 배수관은 층하배관으로 인접 실의 점검 및 보수를 위한 요청이 있을수 있습니다.
- 전열교환기 가동시 소음이 발생할수있으며 환기구 위치나 개소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동절기 난방 운전시에는 FCU를 통한 냉방이 불가하고 하절기 냉방 운전시에는 바닥 복사난방 가동이 불가합니다.
- 제1종 환기방식(기계급기, 기계배기)를 적용하며, 덕트와 연결된 디퓨저(급기구, 배기구)는 각 침실 천장마감에 시공되고 환기유닛은 침실2에 천장노출형 환기장비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 난방 온수분배기는 호실 싱크 하부장에 설치됩니다.
- 렌지후드 상부장은 수납 목적이 아닌 후드 장비 및 자동식 소화기 등이 설치되는 공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환기장비에는 외부 미세먼지를 일부 차단하는 청정필터가 설치되며, 필터는 연2회 이상 교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사용하시는 정도에 따라 교체주기는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의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조명기구, 흡수버, 분전함, 콘센트, 소방설비, 디퓨저, 바닥배수구 및 배선기구류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거실 및 침실 천장에는 냉방용 FCU(팬코일유닛)가 설치되며, 장비 주변에 유지보수 및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됩니다.
- 호실 메인 전원을 차단할 경우 FCU 및 밸브의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 FCU 전원 차단기는 켜짐 상태를 유지하기를 권장합니다.
- 호실 냉방 부하량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고시한 냉방 열사용시설기준에 의거하여 산정되었으므로 이에 대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은 실외기실 및 냉매배관이 설치되지 않으므로 입주자가 개별 에어컨을 설치할 수 없으며, 계약자는 일체의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 천장내부에 상부실 배관이 설치되어 배관소음 발생 및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에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으므로 가스쿡탑 설치가 불가합니다.

■ 기타 유의사항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단위실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사용검사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건축허가변경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 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분양광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분양광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본 분양광고의 기재사항 오류 및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거합니다.

■ 하자담보 존속기간 및 하자보수

- 하자담보 존속기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하자 판정은 사용검사(사용승인)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관리형 토지신탁

- 위 분양 건축물의 신축 및 분양사업은 “(주)동탄디벨로프”가 “교보자산신탁(주)”에게 사업부지 및 시행을 신탁하여 진행하는 관리형 토지신탁사업으로, 실질적인 분양사업자는 “(주)동탄디벨로프”임을 “수분양자”는 인지한다.
- 본 계약의 각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보자산신탁(주)”는 관련 법률 및 본 분양계약상 매도인의 제반 의무(분양대금 반환, 지체상금 배상, 하자보수책임을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않는다)를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부담하며, 이를 넘는 책임은 “(주)동탄디벨로프”가 부담한다.
“(주)동탄디벨로프”의 신탁계약상 위탁자의 지위가 양도되는 경우 “수분양자”는 그 사실을 통지받은 시점에 양도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수분양자”에게 위 분양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이 완료되는 시점과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시점 중 빠른 시점에, 본 계약상 매도인의 지위 및 수탁자가 부담하는 제반 권리의무는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주)동탄디벨로프(지위의 승계가 있을 경우 그 승계인)”에게 면책적,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수분양자”는 이에 동의한다.
- 분양대금은 토지비, 공사비, 금융기관 대출금 상환, 기타 사업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 “교보자산신탁(주)”, “(주)동탄디벨로프”, “(주)디에이건설” 간에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의거 “(주)디에이건설”가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시 준공예정일 및 입주예정일은 최대 3개월 자동 연장되며, “수분양자”는 이에 동의한다.

■ 하자담보 존속기간 및 하자보수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기타 관계법령에 의거 적용된다.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표시사항

- 부동산개발업 등록자 : 교보자산신탁(주) / 사업장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A,B동 7,8층(서초동, 강남교보타워)
- 부동산개발업 등록번호 : 서울080008
- 사업방식 : 관리형토지신탁
- 공급대상물의 소재지·지목·용도·규모
 -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여울동 968-1번지 일대
 - 지목 : 대
 - 용도 :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 규모 : 지하 4층 ~ 지상 최고 13층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대지소유권 100% 확보
- 소유권 이전형태 : 잔금완납 시 개별 등기
- 토지거래허가구역에 관한 사항 : 지정 지역 (단, 오피스텔은 허가 대상 제외)
- 시공업체의 명칭과 공급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행사의 명칭 : 아래 사업관계자 현황 참조
- 공급대금의 관리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그 관리자의 명칭 및 등록사업자와의 관계 : 분양광고 참조
-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와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신탁회사의 명칭 : 분양광고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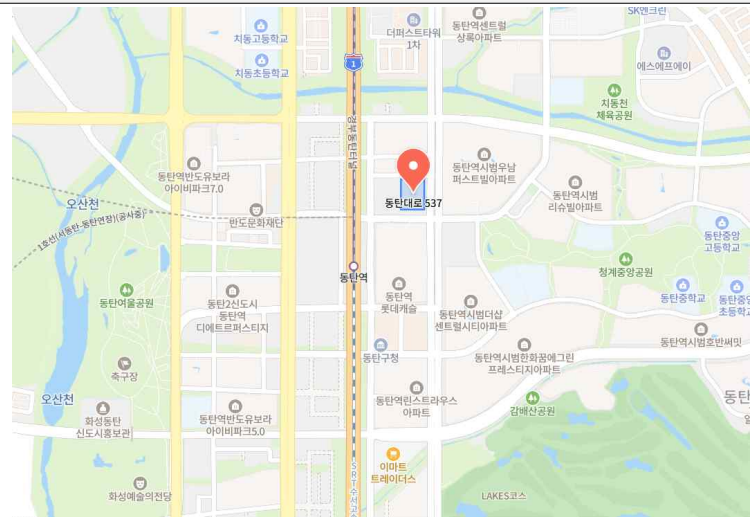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구분	건축	전기	통신	소방
회사명	(주)종합건축사사무소명가	주식회사 디에이치기술단	주식회사 디에이치기술단	주식회사 디에이치기술단
감리금액	₩ 500,000,000	₩ 51,520,000	₩ 16,100,000	₩ 27,600,000

■ 분양사업자(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등)

구분	사업주체 겸 시행수탁사	시공사	시행위탁자	분양대행사
상호	교보자산신탁㈜	(주)디에이건설	(주)동탄디벨로프	(주)지오플랜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A,B동 7,8층 (서초동, 강남교보타워)	인천 남동구 앵고개로 928, 604호(논현동, DA PLAZA)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로 124, 윤정프라자 9층 905호	서울 서초구 방배천로18길 6(방배동, 인성빌딩 3층)
법인등록번호	110111-1617434	120111-0075251	134811-0768806	110111-3019646

■ 견본주택 안내 및 유의사항

견본주택 약도	분양 안내
	■ 견본주택 :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 537, 라스플로레스 B동 1층 1027호~1028호 ■ 사업지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여울동 968-1 ■ 홈페이지 : https://terrace99.co.kr ■ 분양문의 : 1599-9903 ※ 본 분양광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 및 이 광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축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이 우선함.)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광고와 분양계약서상 내용이 상이할 경우 분양계약서를 우선 적용함